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가합5382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운

담당변호사 정성원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양시환

변론 종결 2022. 5. 11.

판결 선고 2022.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2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도시개발사업 및 B 가로조성공사 시행

1) 원고는 서울특별시고시 C(2007. 6. 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된 서울 송파구 D 일원 548,239m²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A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2)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B(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북측에 인접한 F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G(2017. 12. 28.)로 이 사건 도로 남측에 인접한 연결녹지를 축소하여 이 사건 도로를 남측으로 확장하고, 이 사건 도로 북측 일부는 녹지로 조성하는 이 사건 도로 확장 및 가로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가로조성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내용 등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가로조성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도로와 그 인근에 설치된 피고 소관의 맨홀, 배전박스 등 지장물 이설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지장물 이설공사비 부담금으로 2018. 5. 8.경 62,773,590원, 2018. 5. 14.경 318,588,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가로조성공사 중 지중전선로 발견 등

1) 이 사건 가로조성공사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의 중앙부가 남측으로 이동함에 따라 우수의 배수 등을 위한 도로의 곡률에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 일부를 지표면으로부터 약 51cm 깊이로 굴착한 다음 도로의 곡률에 맞추어 다시 포장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 사건 가로조성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H이 2018. 12. 6.경 이 사건 도로 일부를 굴착하던 중 이 사건 도로 포장층과 저촉되는 위치에 피고 소관의 지중전선로(이하 '이 사건 지중관로'라 한다)가 관로식으로 매설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2) 이 사건 지중관로는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의 안정적인 전력수요의 공급을 위하여 서울 강남구 I 부지에서 이 사건 도로까지 설치된 154,000V의 지중전선로로서 별지1 도면 표시와 같이 송전관로

13공, 배전관로 6공, 통신관로 3조의 합성수지파형관 재질의 관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지중관로를 설치하는 'J 공사'(이하 '이 사건 전력구 공사'라 한다)는 1996. 4. 24.경부터 1998. 10. 7.경까지 시행되었고, 1998. 10. 21.경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1998. 11. 4.~5.경 실시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였다.

3) 원고는 2018. 12. 6.경부터 피고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지중관로가 이 사건 가로조성공사 구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조속한 이설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그 이설비용은 요청자인 원고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자, 2019. 5. 24.경 피고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고가 이설비용을 선납부하겠다. 이 사건 지중관로의 현재 심도는 15cm인데, 이 사건 도로의 도로관리청인 송파구청의 지하매설물 현황자료에는 약 1.5m 심도에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도로 설계 및 시공시 이 사건 지중관로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도로계획고를 설정하였다. 이 사건 지중관로가 적정 심도에 매설되었거나 위 지하매설물 현황자료가 현황대로 관리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지중관로 이설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당 비용은 법절 절차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지중관로 이설공사 시행 및 이설공사비 납부

1) 원고는 2019. 10.경 피고와 이 사건 지중관로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이설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

"갑" 원고

"을" 피고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갑"의 K 및 통신설비 이설 요청에 의해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갑"과 "을"간의 공사의 대상(내역), 공사시행주체, 공사비, 공사비 부담주체 및 납부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공사비 부담

1. 공사비

본 협약 체결시점의 공사비는 233,155,000원(부가세 제외)으로 세부공종별 설계(변경),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 등 공사진행(계약, 준공)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사비 확정은 공사준공 후 최종 정산시 결정된다.

(중간 생략)

2. 제1항의 공사비는 "갑"이 부담하며, 모든 설비에 대한 소유권은 "을"이 갖는다. 다만, 이는 "갑"과 "을"간에 공사비 부담 주체에 대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고 신속한 시공을 위해 "갑"이 위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향후 법적 청구 등을 통해 "을"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예정임을 명시한다.

제5조 공사비의 납부

1. "갑"은 공사착수 준비금(설계비 등)에 대해서는 "을"의 납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입금해야 하며, 그 외의 공사비는 "을"이 기본(실시) 설계완료 후 산정하여 "갑"에게 통보한 「공사비 부담내역서(공사비, 납부시기)」에 따른다.

제6조 공사시행 및 공사기간

1. 공사는 "을"이 시행하며, 공사비 부담내역 통보 및 납부 확인 후 공사를 착수한다.

제11조 공사비의 정산

1. "을"은 공사시행 완료 후 "을"의 「지장송전선로 이설업무기준」에 의거 공사비를 확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갑"과 "을"은 공사비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입금)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별지2 도면 표시 공사구간에 위치한 이 사건 지중관로 부분 상단에 설치된 저심도 관로 2개단(배전관로 6공, 송전관로 1공, 통신관로 3조)을 별지1 도면 표시와 같이 이설하여 도로계획고로부터 60cm 이상의 심도를 확보는 방식으로 이 사건 이설공사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이설공사비용으로 피고에게 총 234,676,000원¹⁾,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이설공사 중 통신관로 이설공사를 시행한 L에게 49,6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84,27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전기사업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5호)의 1. 전기설비 제13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 본문2)에 따르면, 지중전선로를 관로식이나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최소 60cm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중관로는 이 사건 도로의 지표면으로부터 약 15~21cm 심도에 매설되어 있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정한 적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이설공사는 이 사건 지중관로가 적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낮은 심도로 매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이 사건 가로조성공사는 이 사건 도로 일부를 지표면으로부터 약 51cm 깊이로 굴착한 다음 도로의 곡률에 맞추어 다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설공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중관로의 설치 및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이 사건 이설공사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이설공사비용으로 지급한 합계 284,276,000원3)은 법률상 아무런 원인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지중관로가 전기사업법 등에서 정한 적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낮은 심도로 매설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이설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이 사건 가로조성공사는 이 사건 이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다른 점을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지중관로를 설치하는 이 사건 전력구 공사는 1996. 4. 24.경부터 1998. 10. 7.경까지 시행되었고, 1998. 10. 21.경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1998. 11. 4.~5.경 실시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였다.

② 이 사건 전력구 공사 당시 시행된 구 전기사업법(1999. 9. 7. 법률 제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0조에 따라 제정된 구 전기설비기술기준4) 제151조 제2항은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는 60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중전선로를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를 60cm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③ 이 사건 지중관로는 전선케이블을 그대로 땅에 매설하는 직접 매설식이 아니라 관에 케이블을 집어넣은 다음 그 관을 땅에 매설하는 관로식으로 매설되었고,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합성수지파형관 재질의 관로로 설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중관로는 구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적법한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되었다.

④ 지중전선로를 관로식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016. 1. 2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4호, 이하 같다) 1. 전기설비 제136조 제2항 제1호에서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1.0m이상으로 하며, 매설 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신설되었는데, 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부칙은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중관로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여 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정한 적법한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중관로의 매설 깊이가 1.0m 또는 60cm 이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미 매설되어 있는 이 사건 지중관로를 매설 깊이 1.0m 또는 60cm 이상이 되도록 다시 매설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결국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이 사건 가로조성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의 중앙부가 남측으로 이동함에 따라 우수의 배수 등을 위한 도로의 곡률에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 일부를 지표면으로부터 약 51cm 정도 굴착한 다음 다시 포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동빈

판사구하경

판사정의진

별지

1) = 기납부액 270,455,000원 - 정산 환불액 35,779,000원.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전기설비 제136조(지중 전선로의 시설)

②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1.0m이상으로 하되, 매설 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60cm 이상으로 한다.

④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84,278,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앞서 본 284,276,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구 전기설비기술기준(2001. 1. 20. 상업자원부고시 제2001-9호로 개정된 것)의 내용을 참조한다.